광전매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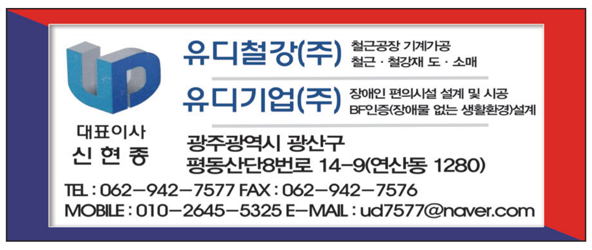

대표전화 062-525-9775 www.snib.co.kr FAX : 062-528-4566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농지에 순환골재, 순환 토사, 오니 등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 우량농지조성지역에 건축 및 콘크리트 폐기물로 보이는 순환골재, 순환 토사, 오니 등이 수십톤이 매립된 의혹이 일자 광산구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우량농지(優良農地)란 농업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좋거나,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를 말한다.

동곡 농협은 "우리도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해 농협 사업의 취지에 맞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며 취득방법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취득은 2억7450만 원 (평당 150만 원) 구입가격은 중앙감정평가원의 평가금액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시세를 반영하였다"라고 설명한 그 문제의 로컬푸드 사업장 토지를 "왜 이사회 의결전 이사회 승인없이 꼭 사전 계약하여 매입을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광~목간 도로 동곡농협 로컬푸드 사업장 매입 농지 폐기물

이는 지난 2020년 1월 6일 동곡 농협은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 2,700만 원을 지불하였고, 1월 22일 이사회에서 로컬푸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55명 대의원 참석에 찬반투표 과반수 28명 이상으로 가결되어야 하나, 26 : 26 무효표 3표로 과반수 2명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한다.

그런데 동곡 농협은 동표라며 어처구니 없는 명분으로 재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촌극들이 연출되었다 한다.

또한 동곡 농협은 광주광역시청과 광산구청에 부지 취득 목적을 농업생산물(벼) 생산·시험포 운영이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했으면서 로컬푸드 사업장 부지 매입이라는 허위사실로 농협 조합원을 기망했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가 하면, 로컬푸드 진행과 관련, 광산구청은 동곡 농협이 매입한 토지는 로컬푸드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동곡 농협에 전달한 사실이 25년 2월 25일 광산구청이 주관한 동곡 농협 로컬푸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확인되었으며, 매입한 농지에 폐기물까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본사 단독 집중 취재에서 밝혀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동곡 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장을 하겠다고 매입한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 개발제한구역에 묻혀있는 석재 골재 폐수처리 오니'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나 임야에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59조를 보면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동곡 농협 임·직원들은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개발제한구역인 광산구 복룡동 123-1 부지 매입 추진위원회 구성·보조금 사업·대출 관련 등 의혹들 까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동곡 농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동취재부

전남 구제역 이틀 연속 '확진 0'

이틀 동안 의심 신고 6건 모두 음성… 확산세 꺾이나
방역당국 "항체 형성 4월 초, 종식 선언 4월 중하순"
생축 이동금지, 차량 지역지정제 등 특별대책 마련

전남 축산 농가를 덮친 구제역이 확산세가 꺾이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틀 연속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방역 당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잠복기와 항체 형성기 등을 감안할 때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고 구제역 종식까지는 3~4주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특별방역 대책도 내놓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영암 3건, 무안 1건 등 모두 4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영암 시종과 군서에서 발생한 2건의 의심 사례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틀 연속 '확진 제로'가 이어진 셈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영암 도포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일 3건, 15일 1건, 17일 3건, 18일 2건, 19일 2건, 20일 1건의 구제역 감염 농장이 발생했다. 수치상 진정세가 뚜렷하다. 영암과 무안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 사례도 없어 '가두리 방역'과 '퍼붓기식 소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그러나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시·군 최초 발생농가 3㎞내 방역대는 지난 15일 백신접종이 완료됐으나 22개 전체 시·군에 대한 접종은 지난 21일 마무리돼 4월 초순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은 소의 경우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 정도로 보고 있다.

구제역 종식까지는 갈 길이 더 멀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종식선언은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방역대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전남의 경우 랜더링(이동식 열처리)까지 감안하면 살처분 종료 시점은 23일로 예상돼 4월13일까지 추가감염이 없고 방역대 내 100% 청정이 확인돼야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나 염소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도 숙제다. 영암과 무안에선 104개 양돈농가에서 돼지 32만 마리, 161개 농장에서 염소 1만7000마리를 사육중이다. 행락인파가 붐비는 봄축제도 고민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4일부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와 도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살아있는 소 이동을 금지했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 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또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통제초소를 늘리고 영암, 무안을 비롯해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 10개 시·군에 내려진 위기대응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소독과 임상 예찰,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락철 농가와 도민, 관광객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임신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임신·출산 지원 확대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슬로건에 발맞춰 올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산후조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여성이 가임기인 부부)만 생애 1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린 것은 물론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광주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도 펼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원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만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포함한다. 산모가 희망할 경우 서비스 등급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박도일 기자